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08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 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평가 기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유기적인 실무 협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과 연차별 성과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및 평가 활성화(안 제5조의2 신설)

- 1)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2)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제4항,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